

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737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2 . 15 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수석전시관 및 컨벤션홀 준공에 따라 추가시설물의 관람료·이용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관광지 입장료 및 개장시간과 자연사전시관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) 24시간 입장료 징수를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조정(안 제6조)
- 나) 입장료 현실화(안 별표1)
- 다) 컨벤션홀이용료 신설(안 별표2)
- 라) 자연사전시관 관람요금 현실화 및 수석전시관 관람요금 신설(안 별표3)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관광진흥법 제64조(입장료등의징수및사용)
- 입법예고 : 특이한 사항 없음

4. 본문 : 붙임

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“당일 00:00부터 24:00”를 “당일”로한다.

③입장료는 동절기(11.1.~2.28.)에는 09:00부터 17:00까지 하절기(3.1.~10.31.)에는 09:00부터 18:00까지 징수한다. 다만, 관광성수기에는 징수시간을 연장운용 할 수 있다.

별표 1, 3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2중 야영장이용료 다음에 컨벤션홀이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컨벤션홀 이 용 료	1회	50,000	4시간 기준
	1일	100,000	8시간 기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입장요금표

(단위 : 원)

구 분	어 른	청소년	군 인	어린이
개 인	1,000	800	800	500
단 체	900	700	700	400

[별표 3]

관람요금표

(단위 : 원)

구 분		어 른	청소년·군인	어린이
자연사 전시관	개인	1,000	800	500
	단체	900	700	400
수 석 전시관	개인	1,000	800	500
	단체	900	700	400

[별표1]

입 장 요 금 표

(단위 : 원)

현					개				
행					정				
구	어	청	군	어	구	어	청	군	어
분	른	소년	인	린이	분	른	소년	인	린이
개	800	500	500	300	개	1,000	800	800	500
인					인				
단	700	400	400	200	단	900	700	700	400
체					체				

[별표2]

시 설 이 용 요 금 표

(단위: 원)

현					개			
행					정			
구	분	당일	체류 (숙박)	비고	(현행과 같음)			
주 차 료	이 룬 차	400	800		(현행과 같음)			
	승 용 차	1,500	3,000					
	버 스	3,000	6,000					
	화 물 차	3,000	6,000					
야영장 이용료	소형천막	2,000		1일당	(현행과 같음)			
	대형천막	4,000		1일당				
					컨벤션홀 이 용 료	1회	50,000	4시간 기준
						1일	100,000	8시간 기준

[별표3]

관 램 요 금 표

(단위 : 원)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구 분		어른	청소년 · 군인	어린이	(현행과 같음)				
자연사 전시관	개 인	800	600	400	자연사 전시관	개 인	1,000	800	500
	단 체	700	500	300		단 체	900	700	400
					수 석 전시관	개 인	1,000	800	500
						단 체	900	700	400